

(問) 本人은 現在 事務室用 5층
빌딩을 保險에 加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物의 一部를 印刷業者
에게 貸貸한 후 그 事實을 保險會
社에 通知하였던바 同社로부터 火
災危險이 높은 業種으로 附加保
險料를 支拂하라는 通告를 받고 貸
借者에게 保險料 附加支拂을 要請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期間에 罷災가 發生하면
保險會社로부터 損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지의 與否를 알고 싶습니다.

다.

(答) 貴下의 물음에 몇 가지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保險者의 一次的인 責任은
被保險者가 保險料를 支給한 以後
부터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火災保險普通約款 第5條에 明示
된 바와 같이 保險者는 保險料 領
受 以後 또는 被保險者와 特別한
約定이 없는 한 保險契約이 締約한
以降일자라도 保險料 支給 以前의
保險事故에 對해서 保險者는 責任
이 없음을 明示하였고 商法 第650
條 및 第656條도 保險者の 責任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
險料를 받은 때로부터 責任이 開始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被保險者가
직당한 時期에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을 때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被保險者에게 保險料 納付를 催告
하고 被保險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
니했을 경우는 保險者一方이 임의
로 解止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습니다.
이렇게 約款이나 商法에 明示
한 것은 被保險者の 義務를 강력히
促求함과 同時に 保險者가 責任지

고 있는 모든 財產을 道德의in 危
險 또는 其他의 危險으로부터 保護
하려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被保險者の 通知義務입니다.
保險契約은 被保險者が 契約
當時의 保險目的物의 狀況을 信義
誠實에 의거 保險者에게 告知함은
물론 保險契約이 存續하는 동안 保
險의 目的物에 發生하는 모든 變動
狀況을 保險者에게 遲滯없이 被保
險者가 通知해야 하는 義務를 갖고
있습니다.

火災保險普通約款 6條에 明示한

가 危險에 따른 적절한 散置를 취
하도록 하였으며 保險者 역시 이에
따른 保險料의 追加支給 等을 催告
토록 함으로써 保險者의 一方의 解
止權을 留保시켜 被保險者를 保
護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民法 第544條에 依하면
契約을 解止할 경우는 當事者
間 어느 一方이 契約을 繼續적으로
存續시킬 수 없다고 여겨질 때는
一方이 相對方에게 催告하고 1個月
後에 解止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一定期를 猶豫한 것은 契約者
의 失手로 契約을 위배하였어도 그
것이 契約存續의 信賴關係를 파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은 契
約이 存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인 것입니다.

셋째 被保險者の 保護

上記한 바와 같이 正當한 契約은
保護하는 것이 法精神이며 衡平原
則에 依해 兩者 공히 保護하는 것
입니다.

商法 第677條에 明示된 것을 보
면 『保險者가 損害를 補償할 機遇
支給받지 아니한 保險料의 残額이
있으면 補償할 保險金에서 控除할
수 있다』라고 함은 上記에서 論한
바와 같이 誠實히 被保險者の 義務
를 履行한 경우는 當然히 保護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被保險者가 通知義務를 履行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保險者の
免責이며 만약 이러한 過失이 保險
者에게 있다면 이는 保險者の 归責
임으로 당연히 補償하여 드립니다.

相談코너

特殊保險

것을 보면 保險의 目的物에 危險이
增加 또는 減少할 경우 保險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도록 하였으며 商
法 第652條에 依하면 이러한 사실
을 通知함은 물론 이를 解怠할
경우 또는 火災保險約款 第8條에
依據 保險契約을 保險者가 全部 또는
一部을 解止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商法 第652條 단서 조항
은 保險者の 解止 權限을 一定期間
동안 留保토록 하였습니다. 즉 保
險者は 그 事實을 알 날로부터 1個
月을 猶豫期間으로 하여 被保險者

李哲民 <金保部次長>